의 안 번 호 700

(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보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6. 25 ·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7. 2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7. 9

2. 개정이유

- 가. 2009. 2. 12자로「주민투표법」(법률 제9468호)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조정하고,
- 나.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(안 제3조): 20세 ⇒ 19세
- 나.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 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(안 제8조 · 안 제9조 · 안 제10조)
 - 주민등록번호 ⇒ 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주소 ⇒ 주소, 거소, 체류지
- ※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7호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

4. 관렵법규

가. 주민투표법」제5조제1항

《관련 법규》

【주민투표법】

제5조 (주민투표권)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<u>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</u>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<u>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</u>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 <개정 2009.2.12>

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<u>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</u>에 따라 **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**
-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(체류자 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**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**
-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<개정 2009.2.12>

[2009.2.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.6.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.]

※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】

제6조 (국내거소신고)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 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**거소(거소)를**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(이하 "사무소장"이라 한다) 또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출장소장(이하 "출장소장"이라 한다)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. ② 부터④까지 생략[전문개정 2008.3.14]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5. 25 ~ 6. 15)

구 분	관 련 법	비고
주민등록번호,주소	● 주민등록법 (제6조,제7조)	
국내거소신고번호거소	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(제6조, 제7조)	
외국인등록번호	● 출입국관리법 (제31조,제36조)	

6. 검토의견

O 본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

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(2007. 6. 28. 선고, 2004헌마 643사건)에 따라

- O 2009. 2. 12자로 주민투표법(법률 제9468호)이 개정되어
 -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 -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으로
- O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주민투표법</u> (이하 법	제1조(목적) 「주민투표법」
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	
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	
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	
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책무) ①(생략)	제2조(책무) ①(현행과 같음)
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	②
로부터 <u>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</u> 협	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
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	
하여야 한다.	
③(생략) 	③(현행과 같음)
 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) <u>20세</u> 이상의	제3조(외국인의 주민투표권 <u>)</u> 19세
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	
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	
를 두고 있고, 출입국관리 <u>관계법령의 규</u>	관계법령에 따라
<u>정에 의하여</u>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	
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	
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법 제7조제1항의	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<u>법 제7조제1항에 따</u>
<u>규정에 의하여</u>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	라
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1 (취케기 기0)
1. (생략) 2.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	1. (현행과 같음) 2. 「 지방자치법」
2. <u>시청사시합</u> 세월소세3%의 표정에 의안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	2. 个有多个有量
3. (생략)	 3. (현행과 같음)
^{3. (84)} 4. <u>기타</u>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	5. (현행의 월급) 4. <u>그 밖에</u>
로 <u>기다</u> 하는 법을 해 가는 게 되었을 받고 말 목 한 사항	
	5. 그 밖에
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. 다만, 법	<u>- 대 제</u> 7조제2
제7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금지대상	항 각 호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
은 제외한다.	사항은 제외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법 제9조제2항의	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법 제9조제2항에 따
<u>규정에 의하여</u>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	<u> 라</u>
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	
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.	
제6조(서명요청방식) ①주민투표 청구인대표	제6조(서명요청방식) ①
자(이하 "청구인대표자"라 한다)는 <u>법 제10</u>	<u>법 제</u>
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	10조제3항에 따라
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	
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	
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.	
②청구인대표자는 <u>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</u>	② <u>법 제10조제3항에 따라</u>
<u>의하여</u>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	
위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	
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	
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이	
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	
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	
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	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<u>법 제</u>	 ③제2항에 따른법 제10조
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	제3항에 따라
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	
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,청구인대표	
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	
임신고증 을 덧붙여야 한다.	
	·
제7조(서명요청기간) <u>법 제10조제3항의 규정</u>	제7조(서명요청기간) <u>법 제10조제3항의</u>
<u>에 의한</u> 서명요청기간은 <u>법 제10조제2항의</u>	법 제10조제2항에 따른
<u>규정에 의한</u>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	
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.	
	•

현 행	개 정 안	
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 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②(생략)	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① 성명, 주민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·외국 인등록번호, 주소·거소·체류지 	
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 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·주민등록번호, 청 구 의 대상 및 취지,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 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	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 <u>법 제12조제1항에</u> 따른	
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.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	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 ①	
제11조(서명보정기간) <u>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</u>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	제11조(서명보정기간)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	

개 정 안 혀 颜 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(생략) 제12조(주민투표청구심의회) ①(현행과 같음) 1. ~ 3.(현행과 같음) 1. ~ 3.(생략) 4.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.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(생략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- 1명 -----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---- <u>7명</u> -----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 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. ④제3항에 따른 ----- 다음 각 호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<u> 어느 하나 -----</u>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하다. 1.~3.(생략) 1.~3.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-----4.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 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~ ⑨(생략) ⑤ ~ ⑨(현행과 같음)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에 필요한 -----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. **제13조(처리기간)** ①(생략) **제13조(처리기간)**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법 제12조제5항에 따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 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 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 ------ 법 제12조제 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 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 7항에 따른 -----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.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-----해당-----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------해당 -----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투표운동의 제한) ① <u>법 제22조제2항의</u>	제14조 (투표운동의 제한) ① <u>법 제22조제2항</u>
<u>규정에 의하여</u>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	에 따라
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	
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	,
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 동과 관련한 옥외집회(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·토론회를 말한다)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.	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
제15조(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) ① <u>법 제10</u>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	제15조(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) ① <u>법 제10조</u> 제1항에 따른
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한다.</u>	<u> </u>
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	② <u>법 제10조제2항에 따른</u>
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한다</u> .	<u></u> <u>따른다</u> .
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	③ <u>제6조제2항에 따른</u>
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	
각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에 <u>의한다.</u>	
④ <u>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청구인서명부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	④ <u>제8조제2항에 따른</u> 따른다.
- 변경 제3오시작에 <u>의한다</u> . -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	<u>바</u> 근다.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
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.	<u></u> 따른다.
⑥ <u>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</u> 이의신청	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-
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<u>의한다</u> .	<u></u> 따른다.
제16조(공표방법 등) 법 제8조제2항, 법 제9조제4항, 법 제10조제2항,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·공보· 게시판·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.	제16조 (공표방법 등)법 제13조제 1항에 따른